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나9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이현성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2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단404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대 114.4㎡에 관하여 2016.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⑤ 더욱이”부터 제10쪽 제14행의 “없는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D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인재, 판사 이의진, 판사 김양훈